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35

발의연월일: 2020. 7. 9.

발 의 자: 안규백·양정숙·전혜숙

이해식 • 이상직 • 이탄희

이원택 · 윤미향 · 주철현

황운하 · 양경숙 · 김영호

박성준 • 권인숙 • 김남국

이형석 · 최종유 · 유동수

김경만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함.

그런데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함에도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이용을 보장하는 근거가 없음.

이에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직장체육시설도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
	육시설 중 공공기관이 설치·운
	영하는 체육시설은 기관의 업
	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
	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
	<u> 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③ 제1항 및 제2항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렁으로	
정한다.	